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608호 2010. 1. 12.

공 고

제2010-22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2
제2010-24호	주민의 조례제개폐청구를 위한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재공표	3
제2010-25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주민수 현황 재공표	4
제2010-26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재공고	5
제2010-29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8

인사발령

행정직 7급 공무원 기동근무	10
-----------------	-------	----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22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8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특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법」이 2008.07.01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비치함(☎490-3830)

2010년 1월 12일

중 랑 구 청 장

주민의 조례제·개폐청구를 위한 19세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제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0항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의 제·개폐 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제공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중랑구청장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 ◆

19세 이상 주민 총수 (A=a'+b'+c')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자 는 제외(공통사항)			연서대상 주민수 (A×비율)
	19세 이상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a')	19세 이상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국민(b')	19세 이상이고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상에 올라있는 사람(c')	
341,911	341,489	382	40	6,839

※인구수 기준시점 : 2009. 12. 31 현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주민수 현황 재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재공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중랑구청장

작성기준 : 2009. 12. 31현재 관내현황

단 위 : 명

총인구수	주민투표권자 총 수 (D=A+B+C)	19세 이상 투표권자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수 (C)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수(D)	비 고
		계 (A=a-b)	19세이상 주 민 수 (a)	투표권 없는자 (b)			
424,761	341,970	341,489	342,849	1,360	99	382	

공 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랑구청장 및 중랑구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중랑구청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재공고

○ 중랑구청장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중랑구청장	341,489명	51,224명
동명	면목본동	30,385명
	면목2동	23,045명
	면목3·8동	24,846명
	면목4동	19,219명
	면목5동	11,919명
	면목7동	21,678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동 명	상봉1동	19,988명	2,999명
	상봉2동	16,060명	2,409명
	중화1동	17,367명	2,605명
	중화2동	26,675명	4,002명
	묵 1 동	27,471명	4,121명
	묵 2 동	16,644명	2,497명
	망우본동	27,978명	4,197명
	망우3동	15,888명	2,384명
	신내1동	22,261명	3,340명
	신내2동	20,065명	3,010명

○ 중랑구 구의회 지역구의원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중랑구가선거구		81,631명	16,327명
동 명	면목3·8동	24,846명	817명
	면목4동	19,219명	817명
	면목7동	21,678명	817명
	망우3동	15,888명	817명
중랑구나선거구		42,304명	8,461명
동 명	면목본동	30,385명	423명
	면목5동	11,919명	423명
중랑구다선거구		39,105명	7,821명
동 명	면목2동	23,045명	391명
	상봉2동	16,060명	391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중랑구라선거구		44,115명	8,823명
동 명	목1동	27,471명	442명
	목2동	16,644명	442명
중랑구마선거구		44,042명	8,809명
동 명	중화1동	17,367명	441명
	중화2동	26,675명	441명
중랑구바선거구		40,053명	8,011명
동 명	상봉1동	19,988명	401명
	신내2동	20,065명	401명
중랑구사선거구		50,239명	10,048명
동 명	망우본동	27,978명	503명
	신내1동	22,261명	503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행정과(02-490-3313)로 문의 하시기 바람.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지역 주민들의 공동주택 주거비용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사업 대상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자부담으로 일부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지원되는 경향을 탈피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 단지에 골고루 혜택이 지원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확대(안 제3조제1항)

- 보안등 전기료 지원 (제6호), CCTV설치 및 방범시설 (제7호)
-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제8호)
- 쓰레기집하시설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교체구입비(제9호)
- 담장개방(제10호), 자전거보관대 설치(제11호)

-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제12호)
 - 지상주차장 설치(제13호), 공부방 설치 및 보수(제14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5호)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Ⅱ. 본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에 비치함(☎490-3380)

2010년 1월 12일

중 랑 구 청 장

인사발령

행정직 7급 공무원 기동근무

2010. 1. 11.

증량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1	오미현	신내제1동기동근무를명함 (2010.1.11.~별도명령시까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지방행정 주사보